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-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

발 의 자 :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보장되는 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’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.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.

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‘의무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‘권리’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·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, 메신저 내용, 메모 등의 의사

교환 내용을 수집할 경우에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,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,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.

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,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,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한편(안 제26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 신설),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39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.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 제목 중 “의무 등”을 “권리 및 의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그 중 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를 “누설하지 아니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.

1.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
2.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
3.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

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,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
2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(전자적 형태로 작성·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물건
3. 변호사가 수입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
-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.
- ⑤ 동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활동을 보조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제3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.

- ② 수사 또는 행정조사 절차로 인하여 제26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적법절차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조력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.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변호사의 지정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-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조력과 비밀유지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비밀유지<u>의무 등</u>)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<u>여</u>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6조(비밀유지<u>권리 및 의무</u>)</p> <p>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<u>지</u> 아니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 ----- -----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2.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.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

<신 설>

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,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

2.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(전자적 형태로 작성·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물건

3.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

<신 설>

④ 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.

<신 설>

⑤ 동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활동을 보조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제39조(감독)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,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.

제39조(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수사 또는 행정조사 절차로 인하여 제26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제2항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적법절차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조력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.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변호사의 지정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조력과 비밀유지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